

한국과 미국, EU의 FTA협정 상 원산지검증에 대한 비교연구*

김 만 길**
정 재 완***

-
- I. 서 론
 - II. EU와 미국의 원산지검증제도
 - III. FTA 관세특례법 상의 원산지검증과 미국과 EU의 비교
 - IV. FTA 원산지검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시사점
 - V. 결 론
-

주제어 : 원산지, 원산지검증, FTA

I. 서 론

2011년 7월에 한-EU간, 2012년 3월에 한-미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비록 한-중 FTA가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FTA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B00204).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강사(제1저자)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교신저자)

이행관리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FTA를 활용하는 수출입에서 관세상 특혜(협정관세 적용)에 필수적인 것이 원산지의 증명과 이에 대한 검증이다. 원산지의 검증 방법은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TA별로 다를 수 있다. 검증을 실시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직접검증, 간접검증 및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형태가 있다.¹⁾ 한-EU FTA의 경우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서명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방식이다. 자율발급은 기업들에게 편리하기는 하지만 수입국 측에서 보다 엄격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EU는 한 회원국이 검증 후 위반사실을 확인하면 역내 27개국의 전 세관에 전파하여 해당 업체가 EU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불이익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EU는 일정한 정보가 있을 때 뿐 아니라 무작위로 수입건의 0.5% 정도를 검증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최소한 연간 3,000건 정도의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도 상당히 엄격한 원산지규정과 검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를 포함해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직접검증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세관은 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직접 방문해 회계·구매 시스템 확인, 부품 공급업체 실사 등을 상당기간에 걸쳐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²⁾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수혜업종으로 간주되는 섬유·의류제품이나 철강, 자동차는 미국 관세당국의 특별 관리품목이며, 특히 섬유·의류품목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감도가 높아 미국은 별도의 검증조치를 두어 철저한 원산지 검증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세관당국도 수출입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최근 5년(2006년~2011년)간 원산지 검증 결과를 보면 수입에서는 주로 원산지기준을 미충족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수출의 경우는 주로 정확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가 문제가 되

1) 간접검증은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세관에 검증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는 방법이고, 직접검증은 수입국 세관공무원이 수출국에 출장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등에서 직접 검증을 실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 사례를 보면 1989년에 Honda 자동차에 대해 200억 원의 관세를 추징한 적이 있고 2001년에는 Ford 자동차에 대해 500억 원 벌금 부과한 적이 있으며, 2002년에는 Triunfo-Mex사에 대해 25억 원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을 받도록 한 적이 있다. 또 2006년에는 Pioneer사에게 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모두가 원산지결정이 부정적하였거나, 원산지관련 증빙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었다.³⁾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따른 부족세액의 추가징수 현황⁴⁾을 보면 한-EFTA의 추정건수가 5년간 총 854건에 21,492백만원, 한-아세안의 추정건수가 총 996건에 17,249백만원으로 건수로는 아세안이, 금액으로는 EFTA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FTA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검증사례가 증가하면서 특혜관세액의 추정 등 무역업체의 불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수출기업 뿐 아니라 상대국 수입상들의 FTA 활용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FTA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이 있다. 연구의 주제를 보면 원산지의 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제도 등 다양한 주제가 망라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검증은 미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다가 2010년 이후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남풍우(2010), 이영수·권순국(2011), 전준수·조준영(2012), 정재완(2012.8, 2012. 12.) 등의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크게 미흡하다. 이 연구는 최근 발표된 한-EU 및 한-미 FTA의 원산지검증과 관련해 EU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산지검증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규정에 대해 비교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산지 검증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시사점으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EU 및 미국의 원산지검증제도

1. EU의 원산지검증제도

EU는 2013년 3월 현재 유럽의 EFTA와 이집트, 이스라엘, 모로코,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 중동국가, 멕시코, 칠레 등 남미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리나라 등 세계 21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들 FTA에서 원산지검증은 모두 수입국의 요청이 있을 시 수출국이 검증을 실시하는 간접검증을 채택하고

3) 검증은 자국 세관직원이 수출국에서 방문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직접검증), 해당국 세관에 요청하여 검증결과를 통보받는 경우도 있다(간접검증).

4) 대표적인 것으로는 2008년 스위스산 금괴의 원산지 검증으로 16건, 총 200억 원을 추정된 사례가 있다.

있다. 수입국이 선정하는 원산지검증 대상은 무작위로, 또는 상품의 원산지나 관련 서류의 진정성, 기타 협정문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해 합당한 의심(reasonable doubts)이 있을 경우 지정된다. 간접검증에서 검증회신에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 수입국이 검증을 요청한 날로부터 10개월 안에 수출국이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거나, 검증결과가 서류의 진정성과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수입국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부여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검증과는 별도로 상호지원 의정서에 의해 후속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입국의 관세당국도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FTA에 대한 검증과는 별개로 EU는 유럽공동체 차원의 원산지검증을 EU 집행위원회 산하의 부정부패 감독기구인 OLAF(European Anti-Fraud Office)⁵⁾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OLAF는 유럽공동체 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사기, 부정부패, 기타 비합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EU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유럽공동체 차원의 조사나 개별국가의 조사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은 개별회원국 차원에서 수행되나 EU 공동체 전체의 재정적 이익에 반하는 위법행위나 관세법, 또는 농업법을 위반한 명백한 정보가 있을 경우 개별회원 국가는 OLAF에 이를 통보하고 공동체 차원에서의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OLAF의 수사 업무의 법적 권한은 Council Regulation(EC) No 1073/1999의 Article 3(외부수사)⁶⁾, Article 4(내부수사)에 근거하며 현장조사⁷⁾와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 또

5) OLAF에는 약 500여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2009년 기준 5,700만 유로 정도다. 사건 조사 개시, 조사 진행, 수사 종료 등 OLAF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와 협의 후 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재직 기간은 5년이다. OLAF의 운영을 모니터링하는 감독위원회는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무총장과 동일하게 유럽의회, 유럽연합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집행부는 관련 이사회의 대표로 구성되고 사무총장에게 수사개시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6) Article 3에 의하면 OLAF는 Regulation No.2185/96에 의해 회원국에서, 또는 협정이 발효되고 있고 제3국가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7) Article 2에 의하면 집행위원회는 (i) 여러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economic operator)가 연루되어 있는 심각하고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비합법적인 행위, (ii) 재정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동등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한 회원국에서 발생한 특정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나 수사 강화가 필요한 경우, (iii) 관련이 있는 해당 회원국의 요청에 의한 경우 현장 수사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 갖고 있다. OLAF는 증거압수, 보상, 자산 동결과 같은 조치를 제안할 수는 있으나 각 국가들로 하여금 특정 제재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조사가 종결되면 최종 사건 수사 보고서를 집행부에 제출한다.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집행부는 후속절차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으며, OLAF는 개별 사건의 특정 요구조건에 맞게 사후 절차를 수행한다. 사건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완료되고 집행부에 의해 승인되면 필요에 따라 후속단계가 실시되는데, 후속 단계는 권한이 있는 공동체 기관과 각 회원국의 국가 기관에 의해 OLAF가 제안한 행정적, 재정적, 입법적, 사법적, 규율상의⁸⁾ 조치 실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단계다. 사후단계가 종료되면 EU 국가와 관련 국가에 결과를 통보한다.

2. 미국의 원산지검증제도

미국은 2013년 3월 현재 멕시코 및 캐나다와 체결한 NAFTA외에 이스라엘, 요르단, 바레인, 오만, 모로코 등의 중동국가,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의 남미국가, 우리나라,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미국이 체결한 이들 FTA의 원산지 검증은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서면질의, 현장방문조사를 수행하는 직접검증 방식이다. 미국의 원산지검증대상은 미국 세관의 위험관리 시스템에 따라 세수 손실이 크고 미국경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된 PTI(Priority Trade Issues)로 자동차, 섬유·의류, 철강, 전자, 농산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 세관은 조사대상자를 선별한 이후 원산지 검증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자재명세서, 원산지 결정방법 등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세관 수입담당자가 직접 수출업자를 방문하기도 한다. 세관 수입담당자의 현지방문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 검증팀이 구성되어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미국 세관의 검증절차에는 전체적으로 약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서면조사 과정에서 미국 세관이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8) 규율상의 후속절차는 내부조사에 의해 EU 직원으로써의 직무태만 및 유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증거를 확보한 경우, 적절한 규율상의 조치(appropriate disciplinary action)를 위해 권한이 있는 EU 기관에 그 사례와 파일을 송부하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후속조치를 확실히 실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절차이다.

수출자에게 서면질의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요청하면 조사대상 수출자나 생산자는 통보된 날부터 30일 안에 이에 답변해야 한다.⁹⁾ 만일 기한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특혜관세 부여를 중단할 수 있다. 서면조사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 현지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방문조사시는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국 세관 등에 현지방문조사의 취지에 대해 서면 통보를 하고, 해당 수출자나 생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회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는 1회에 한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방문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현지방문조사에서는 회사관계자 인터뷰, 회계구매재고관리시스템 심사, 역내부가가치 등에 대한 보관서류의 일치 여부, 공급자 확인서 등의 자료 보관상황, 재료 공급자에 대한 확인 등 원산지 결정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집중검증을 실시한다.¹⁰⁾ 검증이 종료되면 60일 안에 검증대상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검증결과를 통보하는데, 최종 서면결정서를 통보하기 전에 사전통보를 하며, 만일 검증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생산자와 수출자는 30일 안에 이에 대한 자료 보완 및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재검토 작업 후 최종 서면통보를 한다.

Ⅲ.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검증과 미국과 EU의 비교

우리나라 FTA의 이행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원산지검증에 대해서는 발효된 8개 FTA에 각각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2006년 1월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FTA 관세특례법)에 정해 두었다. 법체계상 FTA 관세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9) 일례로 NAFTA의 원산지 검증 서면질의서(CBP Form 446)는 생산과정, 비원산지 재료 및 부품, 원산지 재료 및 부품, 추가적 질문, 보증 등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설명서, 원산지 재료에 대한 증빙자료, 부가가치 산출방법, 공급자 리스트 등의 자료가 요구된다.

10) 미국은 NAFTA의 경우 통일되고 일관된 원산지 검증절차의 적용을 위해 NAFTA 검증 매뉴얼을 작성하고 유사한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NAFTA 검증 매뉴얼은 각국의 검증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외국 현지방문 조사에 중점을 두어 검증단계별 목표 및 절차, 권고하는 검증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되며, 동 특례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¹¹⁾ 아울러 FTA 관세특례법 또는 관세법이 FTA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검증대상의 결정

FTA와 관련한 원산지검증은 어느 FTA에서도 관심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특히 관심이 높은 것이 수출규모가 큰 한-EU 및 한-미 FTA와 관련한 원산지 검증이다. 한-EU 및 한-미 FTA에는 원산지의 검증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¹²⁾하고 있다. <표 1>을 보면 어떤 경우 원산지검증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한-EU와 한-미 FTA는 수입국 관세당국에 일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FTA의 원산지 검증대상 결정 관련 규정

한-EU FTA ¹³⁾	한-미 FTA ¹⁴⁾
원산지증명의 사후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한-EU FTA에 규정된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¹⁵⁾ 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당사국은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섬유 또는 의류상품과 관련해 수입당사국이 합리적 의심 ¹⁶⁾ 을 하여 수출당사국에 요청하는 경우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자료 : 한-EU FTA, 한-미 FTA 협정문

11) FTA 관세특례법 제3조 제1항

12) 한-미 FTA 제4.3조제5항 및 제7.5조제6항.

13)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

14) 한-미 FTA 제6.18조 및 제4.3조제5항.

15) 일반적으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수출업자에 의해 서명되지 않은 서류, 발급기관에 의한 서명 및 발급일자 누락, 기관발급시 규정되는 내용 이상의 원산지에 대한 언급이 물품 또는 포장에 표시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공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된 스템프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등이다.

16) 한-EU FTA에서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어떤 정의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나 한-미 FTA에는 '합리적 의심'과 관련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출처로부터 획득한 관련 사실정보를 기초

한편, 국내법상 원산지의 검증(조사)¹⁷⁾ 사유는 FTA 관세특례법 제13조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해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보면 ①과 ②는 검증대상 결정에 대해 관세당국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③은 의무로서 검증을 행하게 되는 것을 정한 것이다.¹⁸⁾ 따라서 우리나라가 검증대상을 결정할 때 협정보다는 FTA 관세특례법 또는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청고시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정보의 품질평가 및 원산지검증대상 선별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에 의거하여 검증대상을 선별하는데, 동세칙 제9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원산지정보 분석결과를 기초로 원산지 검증대상을 선별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¹⁹⁾ ① A등급 정보는 생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검증 착수한다. ② B등급 정보는 생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산지검증 착수한다. ③ C등급 및 D등급 정보는 지속적 관찰대상으로 분류하여 향후 원산지검증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세관장은 ① 타 지역 세관 또는 같은 세관 내 통관부서(납세심사부서를 포함한다)에서 원산지검증을 의뢰받은 경우, ②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원산지검증을 요청받은 경우, ③ 관세청장의 특별 검증지시가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FTA특혜관세 불법적용의 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검증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원산지검증 대상의 결정은 검증을

로 한 의심을 말한다.(한미 FTA 제4.3조제5항 및 제7.5조제6항)

17) 협정에서는 검증(ver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검증 뿐 아니라 '원산지확인'(관세법 제232조 등), '원산지조사'(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2조 등) 또는 '원산지심사'(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2조의 심사개념 및 관세행정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등을 혼용하고 있다.

18)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정보의 품질평가 및 원산지 검증대상 선별에 관한 시행세칙'이라는 훈령을 제정(고시 제1455호, 2011.11.11시행)하여 구체적인 검증대상 선별방법을 정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

19) 다만, 해당 세관의 인력, 내부행정 여건, 중복수사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원산지 검증대상에서 유보하거나 검증착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실시할 세관의 인력과 예산 등 자원 보유량의 실질적인 제약을 받는다. 한정된 자원에서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검증요청이 많을 경우 자원의 많은 부분이 그 요청을 이행하는데 투입되어야 하므로 수입물품과 관련한 원산지결정에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여력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2. 검증방법

검증방법 문제는 계약상대국에 소재하는 수출자나 생산자들에 대한 검증을 수입국 관세당국이 직접 수행(직접검증)할 것인지, 수출국 관세당국에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수행(간접검증)할 것인지를 문제다. 한-EU 및 한-미 FTA에 규정된 원산지 검증방법 규정은 <표 2>와 같다.

<표 2> 원산지 검증방법 관련 규정

한-EU FTA ²⁰⁾	한-미 FTA ²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은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 양 당사자는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공동조사를 위해 의정서 제7조²²⁾를 원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한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당사국은 다음 수단에 의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②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③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④ 섬유 또는 의류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⑤ 수입 및 수출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절차

자료 : 한-EU FTA, 한-미 FTA 협정문

20)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

21) 한-미 FTA 제6.18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제5항.

22) 한-EU FTA에서 규정한 공동조사에서 원용하도록 한 '세관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7조에 자세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FTA 관세특례법에도 간접검증과 직접검증 모두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FTA별로 검증방법을 규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FTA의 원칙적인 검증방법의 문제는 국내법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FTA 자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고, FTA마다 이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FTA관세특례법의 규정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다만, FTA에는 세부적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은 국내법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EU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검증함에 있어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공무원을 EU측 당사자의 원산지 조사절차에 참관하게 하는 경우 의정서 제7조 ④항에서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이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되어 있으나,²³⁾ 요구되는 ‘설정된 조건’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에는 섬유 또는 의류상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검증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경우 어떤 절차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다. 반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경우 간접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직접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⁴⁾ 그러나 직접 방문하는 경우 당사국간 방문을 수행하는 절차에 대해 합의하도록만 하였고 자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²⁵⁾ FTA 관세특례법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이유, 조사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FTA에는 조사대상자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명시한 규정이 없다. FTA 관세특례법이 미국 국민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규정에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기속되겠지만 미국 관세당국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섬유 및 의류의 경우 ‘사전통지’ 자체를 금지하고 방문시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법과 크게 차이가 나는 내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규정과 FTA 관세특례법 규정이 상충될 때는 FTA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적어도 한-미 FTA에 의한 섬유 및 의류의 검증은 한-미 FTA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3) FTA 관세특례법 제13조의2.

24) 한-미 FTA 제4장 부속서 4-가

25) 한-미 FTA 제6.18조 제1항 및 제2항.

3. 검증절차

FTA 관세특례법은 국내에서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와 관련해 별도의 절차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FTA 원산지검증도 관세법에 규정된 심사 또는 관세조사 절차에 따라 검증이 실시된다. FTA 관세특례법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출자 등²⁶⁾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증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내 통지를 규정하고 있다.²⁷⁾ 한-EU FTA에 규정된 원산지검증절차는 간접검증으로 비교적 간략한편이지만²⁸⁾ 한-미 FTA의 그것은 보다 복잡한테 관련된 규정을 요약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한-미 FTA의 원산지검증 절차 관련규정

	검증 절차 규정
한-미 FTA ²⁹⁾	<일반상품> - 관세당국은 의무로서의 역할이 없음. <섬유 및 의류상품> ①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해 수입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수출당사국의 자체 발의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② 수입당사국이 ①의 요청을 할 때는 검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생산, 무역 및 운송문서와 그 밖의 정보를 자국법에 합치되게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여야 함. ③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도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 및 사실을 포함하여 검증결과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해야 함. ④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 영역에서 검증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사업장에 수출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함께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여 검증을 지원하는 것을 허락해야 함. 방문은 수출자, 생산자, 그 밖의 사람에게 사전통보없이 이루어지며, 수출당사국은 방문시에 그 사람으로부터 현장방문의 수행에 대한 허락을 구하여야 함.

26) '수출자 등'에 포함되는 범위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당해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당해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자이다.

27)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제6항.

28)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 세관분야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7조 내지 제12조.

	⑤ 섬유 및 의류상품에 대해 수입당사국이 자국의 검증 요청후 12월 이내에 원산지신청이 정확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검증대상인 섬유 또는 의류상품과 그 상품을 수출했거나 생산한 유사한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 부인 등 적절한 조치를 자국법에 합치되게 취할 수 있음.
--	---

자료 : 한-미 FTA 협정문

〈표 3〉과 같은 FTA의 규정과는 별개로 FTA 관세특례법은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생산자 등에 대한 간접검증을 위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할 경우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검증요청 시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 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³⁰⁾ 아울러 수입자에게 검증요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FTA 관세특례법은 우리나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등³¹⁾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 대한 절차를 〈표 4〉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³²⁾

〈표 4〉 FTA 관세특례법에 규정된 원산지의 직접검증 절차

구 분	세 부 절 차
사전동의 요청	조사시작 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예정기간 등을 조사시작 30일 전까지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조사의 연기신청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29) 한-미 FTA 제4.3조제3항 내지 제5항, 제8항 내지 제11항.

30) FTA 관세특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31) 생산자 또는 당해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당해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32) FTA 관세특례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10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

구 분	세 부 절 차
조사대상자의 동의여부 통보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30일 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는 불가. 만일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함.
수입자 및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	수출자 등 가운데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결과 통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해야 함.
이의제기 절차	조사결과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이의에 대한 결정과 통지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함.

자료 : FTA 관세특례법

4. 협정관세 적용의 배제와 처벌

검증결과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배제와, 만일 허위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고의성이 있다면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문제가 따른다. FTA 관세특례법 제 16조에 의하여 세관장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 한다. 특혜관세 적용의 배제와는 별개로 FTA 관세특례법은 제22조(벌칙) 및 제23조(과태료) 규정을 두어 수출자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부정으로 발급하였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등 동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성이 있을

경우다. 한-EU FTA에는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 혜택이 원산지신고(증명)서에 근거하도록 하였고, 원산지증명서는 의정서에 규정한 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작성될 수 있으며, 수입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³³⁾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당연히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출당사국에 검증요청을 한 경우 검증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례자격을 거부하도록 규정하였다.³⁴⁾ 한-미 FTA에는 ①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②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에 대한 서면통보를 접수한 후에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 증빙과 관련한 기록이나 시설에 대한 접근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③ 당사국이 수입자, 수출자 또는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 유형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에는 섬유 및 의류상품과 관련하여 수입당사국이 자국의 검증요청 후 12월 이내에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또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수입당사국은 검증대상인 사람이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모든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V. FTA 원산지검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시사점

FTA 체제에서 특혜관세 적용에 필수적인 것이 원산지규정의 준수인데, 규정준수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원산지검증이다. 원산지검증

33)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34)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제7항

이 중요한 것은 검증과정에서 원산지가 잘못 판단되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FTA 협정관세의 적용과 관련한 EU와 미국의 검증방식 및 한-EU, 한-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의 규정을 비교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FTA 원산지 검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검증은 성격상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이유가 부적정한, 또는 불법적인 협정관세의 적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의심이 제기될 경우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나 FTA가 협정상대국과의 호혜적 통상확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합리적의심’의 존재만을 이유로 일방적 검증을 실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관세당국은 협정상대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원산지검증이 실시될 수 있게 검증건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1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검증요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³⁵⁾ 이에 부응하면서도 불법적인 협정관세의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검증을 담당하는 조직과 전문인력 측면에서 적정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원산지검증 및 검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서 체약국의 관세행정 당국간 상호신뢰와 협력의 필요성이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과 체결된 FTA에서 그 필요성이 높겠지만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과의 FTA에서도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비협조 또는 업무태만뿐 아니라 단순한 실수 등으로 협력이 충실하지 못할 경우 그것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상의 특혜배제로 나타나 체약국 관세당국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결국 FTA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체약상대국에서의 직접검증 또는 검증참관시 적용할 세부절차를 규정의 필요성이다.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자 또는 참관자가 수출국내에서 어느 정도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는 역시 성격상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당사국간 협의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가급적 동일한 원칙하에 이루

35)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한 214건이었으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전년 대비 219%가 증가한 186건이었다. 관세청, 2012년 정부업무 자체평가 자료(2012.12.) 참조.

어질 수 있도록 직접검증 및 참관의 세부절차를 체약당사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EU FTA 의정서 제7조 ③④항의 ‘설정된 조건’에 대한 구체적 명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절차의 구체화는 성격상 수입물품에 대한 직접검증으로 외국의 수출자나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세관이 검증을 실시할 경우와, 수출물품에 대한 직접검증으로 외국세관이 우리나라 수출자나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할 경우 모두 필요하다. 이러한 세부절차의 규정은 검증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무역업체로 하여금 협정관세 적용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원산지검증 개시전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전동의의 필요성이다. 현재 FTA관세특례법은 FTA 체약상대국의 생산자나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표 4>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였고, 조사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³⁶⁾ 그러나 한-미 FTA에 의해 미국세관당국이 우리나라 수출자나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직접검증을 실시할 경우 방문절차에 대해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도록만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³⁷⁾ 사전통지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세관당국이 미국 수출자나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직접검증을 할 경우도 한-미 FTA에 근거하여 FTA관세특례법 규정과 달리 굳이 조사대상자들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전통보는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역시 무역업체 자신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한-미 양국간 설치된 공동위원회³⁸⁾의 협의를 통해 세관당국이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할 경우 사전통지를 하는 등 세부적인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출자(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소명서를 제공한 생산자 포함)의 경우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부합되는 생산 및 투자패턴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세관의 사후

36) 이 경우 물론 조사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사 없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것이다. FTA관세특례법 제16조.

37) 한-미 FTA 제6.18조 제2항

38) 한-미 FTA 제4.4조 및 제22.2조 참조.

검증에 대비해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관해야 한다. 만일 자료를 충실히 보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은 물론이고 이미 적용한 협정관세에 의한 특혜도 모두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원산지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수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수입자를 대상으로 특혜를 취소하겠지만 그 파장은 결국 수출자와 생산자까지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V. 결 론

한-EU, 한-미 FTA의 발효에 따라 사실상 우리나라의 FTA 이행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원산지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검증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관련제도나 또 그 제도를 집행하는 원산지검증 조직, 인력을 살펴보면 상당히 미흡한 면이 많다. 원산지검증에서의 문제 발생은 특히 수출기업과 수출물품 생산자 및 국내의 원자재 공급업체에 까지 연쇄적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납세의 부정확 등이 확인되었을 때 수입업체에게 주로 발생하던 피해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제도적으로는 FTA 관세특례법을 제정하여 FTA의 국내이행을 위한 기본법의 체계를 갖추긴 하였으나, FTA 관세특례법 현행규정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의 문제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증절차의 투명성 확보다. FTA나 FTA 특례법에는 기본적인 절차규정만 두고 있을 뿐 세부적인 절차를 정해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의 투명성 확보는 무역업체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편, 조직이나 인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관세청 내에 FTA집행기획관실이 마련되어 있으나 급증하고 있는 외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을 고려하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같은 수준의 검증을 실시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FTA가 복잡하게 발효되면서 불법적인 협정관세의 적용을 통한 탈세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업무량 증가를 고려한 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원산지검증은 직접검증이나 간접검증을 막론하고 협정인 FTA와 국내법, 그리고 판례 등을 복잡하게 고려하여 최종 조

치를 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팀 구성이 필수적이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 확보는 크게 부족한 편이다. 정부쪽의 원산지검증 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의 원산지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심각하다고 보여진다. 2013년부터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중소기업이 채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의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에서 인건비의 일부가 지원되도록 하였지만³⁹⁾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이는 무역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EU와 미국의 FTA와 관련한 원산지검증제도와 한-EU 및 한-미 FTA의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FTA 관세특례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한 탓에 EU, 미국 및 우리나라의 실제 원산지검증 상황에 대한 실증조사는 미흡하게 되었다. 이는 이 연구의 한계다. 향후 국내외에서 행해진 FTA 원산지검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다양하게 실증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제도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39) “원산지관리사 자격 국가공인” 제하의 보도(아시아 경제, 2012.12.30.) 등을 참조.

참 고 문 헌

- 관세청, “FTA 관세행정 종합대책”, 2010.7.
- 기획재정부·관세청, “거대경제권과의 FTA 활용지원 대책”, 2010.6.
- 김석오, 정재완, “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11, 2010
-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 FTA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정책연구원, 2008
- 남풍우, “자유무역협정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제3호, 2010.8.
- 안응린, “EU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제2호, 2007
- 윤영호, “FTA 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모델”, 두남출판사, 2009
-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9권, 2011.2.
- 장근호·정재완, “한·EU FTA 원산지결정에 대한 EU재판소 원산지 판례의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13권제3호, 2012.8.
- 전준수·조준영, “한-EU FTA 원산지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제2호, 2012.5.
- 정재완, “FTA 원산지검증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5권, 2012.8.
- , “FTA이행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제4호, 2012.12.
- 정재호·이명현, 『특혜관세제도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 WTO, "Rules of Origin Regim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2002
- 한-미, 한-EU FTA 협정
FTA 관세특례법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정보의 품질평가 및 원산지 검증대상 선별에
관한 시행세칙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FTA Verification System Among Korea vs USA, EU

Kim, Man Gil
Chung, Jae Wan

Origin verification is regarded most essential for FTA performance administration. This administration is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system where Korea has adapted indirect system to Korea-EU FTA while direct system to Korea-USA FTA.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ystem of origin verification and provisions contained in preferential tariff law of each countries. The study finds that Korean origin verification system is a bit lack of procedural provision resulting in less protection of domestic trader's rights. Another point is that Korean Customs Authority is weak, in respect of organization and man power, to protect illegal bilateral tariff application by counter part FTA countries. An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makers to arrange detailed FTA origin verification procedures with earliest meeting with counter part FTA countries, and further stress that make up of organization and man power for origin verification in a timely manner.

Key Words : Certificate of Origin, Origin verification, FTA